

#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6월 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' 사업은 국내·외의 다양한 청년(단체)들이 모여 청년문제 등을 자유롭게 토론 및 협력하고, 정보 교류 할 수 있는 열린 교류공간 조성사업으로,
- 나. 많은 내·외국인 청년(단체)들이 365일 24시간 방문하여 청년문제 등의 논의를 위해 커뮤니티, 정보 교류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운영 서비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.
- 다. 이에 따라, 주 이용자인 청년(단체)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, 청년 사업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
- 라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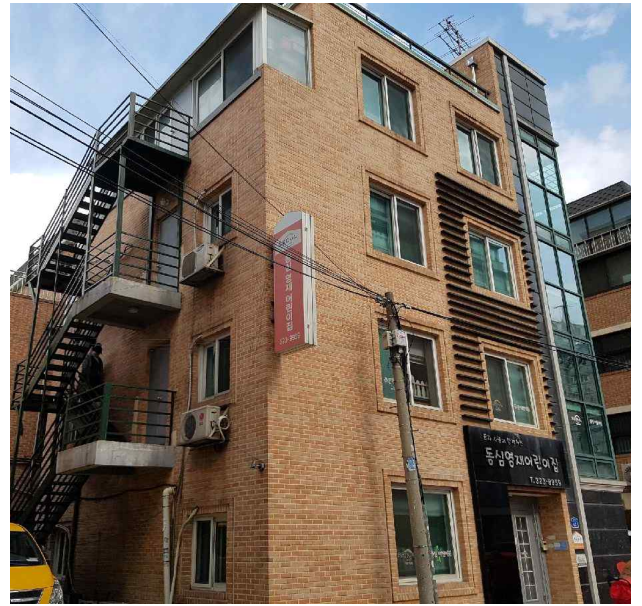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'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'
- 시설규모 : 지상 4층(연면적 313.91㎡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(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8-20)



<위 치 도>



<현장사진>

- 개소일자 : 2017.10월(예정)
- 이용대상 : 국내 · 외(서울·지방·해외 등) 청년(단체)
- 주요내용 :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활성화, 청년활동생태계 구축 협력,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

#### 나. 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18.01.01. ~ 2019.12.31.)
- 위탁업무 : 청년교류공간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 -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 -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활성화 및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
  -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
- 소요예산 : 498백만원(2018년 예산편성 추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19조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,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,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19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편성 추진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지원팀 장수천 (☎ 2133-6585)